#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| 의 안<br>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일자 : 2012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## 1. 제정이유

○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에 대비해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복지관 설치목적 및 사업, 이용과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4조)

○ 복지관의 가정복지, 아동복지, 청소년복지, 노인복지, 장애인복지 사업 등 사업수행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의 우선 이용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의 이용 제한

나. 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～제12조)

○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요함

○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

○ 이용자들에게 사용료 징수 다만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국가유공자 면제

○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가능

○ 군수는 시설의 운영상황 및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

○ 군수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

**3. 참고사항**

가. 근거법령 :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2013년도 예산에 반영, 예산담당부서와 합의완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2. 11. 23~12. 13)결과, 특이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의견없음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#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, 치료하며 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복지관의 명칭은 "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"이라 하며, 복지관은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-9번지 안에 둔다.

**제3조(사업)**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가정복지사업 : 가정문제 종합상담, 직업, 부업 기능훈련 및 알선
2. 아동복지사업 : 탁아,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, 취미교실, 직업교육 및 알선
3. 청소년복지사업 :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, 취미교실 직업교육 및 알선
4. 노인복지사업 :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 지도교육, 공동작업장 운영
5. 장애인복지사업 : 장애인 상담 및 재활 서비스, 취업교실
6. 기타 :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필요한 사업

**제4조(이용 및 제한)** 복지관의 시설은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을 우선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복지관 이용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
2.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
3. 기타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5조(운영)** ①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능력,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, 위탁하여야 한다.
③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「사회복지사업법  시행규칙」에 따른다.

**제6조(운영비 보조)** ①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②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비용의 수납)** ①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장애인, 다문화 가정,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.

**제8조(위탁계약)**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복지관시설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위탁기간)**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군수는 사업실적 등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. 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,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②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③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허가 없이 복지관 내 시설을 설치,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.
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, 원상복구 불가시 군수가 정한 상당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.
⑤수탁자는 관계법령, 조례 등에 의한 명령,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지도감독)**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위탁해지)**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
2.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
4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②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, 비품일체는 군에 귀속한다.

**제13조(준용규정)**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